

미국의 에너지 음료시장현황

- 로스엔젤레스 aT센터 -

□ 에너지 음료의 정의

- 에너지음료는 열량외에도 카페인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말하여 기타 에너지 충전을 위한 성분들(타우린, 비타민B, 기타 생약성분)을 포함하고 있음
- 1세대 에너지음료는 일본에서 판매된 Lipovitan D 였으며 미국에서는 1997년에 Red Bull이 첫선을 보인후에 현재 3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 왔음.

□ 시장규모

- 에너지음료는 스포츠음료 및 건강음료와 함께 기능성음료 카테고리
 - 전세계적으로는 47.3%, 미국시장에서는 63%를 차지
 - ※ 기능성음료시장 중 가장 높은 비중
 - '08년도 미국의 기능성음료시장규모는 약 76억불에서 2013년에는 약 200억불로 증가
- 미국의 주요 에너지음료 및 시장점유율

제품명	회사명	시장점유율(%)
Amp	Pepsi Co	3.6
Full Throttle	Coca-Cola Co.	6.9
Rockstar	Rockstar Inc.	11.4
Monster	Monster Beverage Co.	14.4
Red Bull	Red Bull Inc.	42.6

□ 소비동향

- 미국에서 에너지음료의 주요 소비층은 운동선수들이었으나 시장규모와 제품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현재 주요 소비층은 18세~34세의 젊은층으로 형성되어 있음.
 - 이들은 주로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구매하며 최근의 제품트렌드는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Natural, Organic, Gluten-free 등을 나타내고 있음.

□ 미국의 에너지음료에 대한 규정 및 안정성논란

- 현재 미국의 경우 에너지음료에 대한 규정이 매우 관대함
 - 대표 성분인 카페인에 대한 규정은 식약청 규정 21CFR182.1180에 명시되어 있음
 - ※ 탄산음료에 포함되는 카페인 용량규정은 12-oz음료의 경우 0.02%이내, 71mg이내
- 대부분의 경우 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에는 카페인 함유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음료가 평균적으로 oz당 10mg의 카페인을 함유
 - 최근들어 학자와 의사들을 중심으로 정부당국에 에너지음료의 보다 강력한 규정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
- 식품라벨링 규정상 카페인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포장에 명기해야 함.

□ 미국에 대한 에너지음료 수출절차

- 먼저 식품제조, 포장시설에 대한 FDA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식품의 성분검사(일반성분검사, 영양분석 및 중금속검사, 잔류농약검사)를 하여 FDA의 라벨링 규정에 맞는 포장라벨링을 하여야 함.
- 일반식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(Dietary Supplements)으로 수출,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효능에 대한 과장광고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조식품으로의 특정성분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Supplements Facts를 표기하여야 함.

□ 수출음료가 산성 또는 저산성 식품인 경우

- 산성화된 식품(Acidified Food - pH4.6이하 수분활성도 0.85이상)과 저산성식품(LACF : Low Acid Canned Food - pH4.6이상 수분활성도 0.85이상)은 부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.
 - ※ 미국의 연방법 21 CFR 108.25와 108.35규정
 -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 (FCE Number :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)
 - : FDA Form 2541을 통해 등록하여 FCE Number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는

FDA 시설등록과는 별개의 것임.

FCE는 생산공장의 변경이 없는 한 제조업체가 한번만 등록하면 되는 사항임.

- 공정과정 등록 (SID Number : Submission Identifier Number)

: FDA Form 2541a (살균처리포장 : Aseptic packaging 일 경우 FDA Form 2541c)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FDA 검토후 SID Number를 부여함

※ SID는 해당제품별로 제조공정에 대한 등록번호를 모두 받아야 함

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8가지는 모두 박테리아가 살 수 없거나 증식할 수 없는 경우임.

1. 산성식품(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pH4.6이하)
2. 산성식품(드레싱, 조미료)
3. 알코올음료
4. 탄산음료
5. 발효식품(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도가 4.6이하로 될 경우)
6. 수분활성도 0.85미만
7. 냉장보관 되어 판매, 유통되는 식품
8. 잼, 젤리 등(21 CFR 150)의 식품

원래 산성식품이었지만 식품첨가제나 수분이 첨가되어 저산성 식품으로 되었다가 다시 산성식품이 된 식품을 산성화식품(Acidified Food)라고 하며 이는 SID 등록 대상임.

※ FCE/SID Number는 수입허가가 아닌 단순한 수입자격요건이므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함

※ FCE(공장등록)와 SID(공정등록)에 관한 사항은 21 CFR 108 과 2541a filing process Introduction을 참고하여 준비하며 대부분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